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 
번호

제738호

2017. 12. 14.(목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30일

-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해 공채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감축하고, 도민의 공채 매입부담을 경감하여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 (안 제8조 제2항)
  - ②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 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-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공채”라 함) 발행수입임.

#### ◆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공채판매액	융자금 이자수입	융자금 원금회수	전년도 이월액	기타수입
512,197,071 (100%)	164,376,620 (32.1%)	24,007,373 (4.7%)	183,357,000 (35.8%)	138,687,585 (27%)	1,768,493 (0.4%)

- 본 조례안은

제8조제2항에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공채 매입 기준 50% 감면과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한 공채 매입 의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한시적으로 면제하고,

- 별표 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으로,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에 따라 공채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금액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, 본 조례안의 면제 규정은 법적으로 타당함.

- 또한, 차량등록, 계약체결 증가 등에 따른 공채(이율 1.25%) 매출증가로 기금 부채는 증가하는 반면, 금리 인하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(이율 2.0%)는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,

- 공채 매출액의 68%(2016년 기준)를 차지하는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의무를 1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도민의 공채 매입 부담 경감 효과뿐 아니라, 기금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.

◆ 지역개발공채 발행금리 및 용자이율 변화 추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4.1	2013.8	2015.5	2016.8	2017.8
공채발행	2.5%	2.0%	1.5%	1.25%	1.25%
용자이율	3.5%	3.0%	2.5%	2.0%	2.0%

◆ 지역개발기금 부채 증가 추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
부채 현황	611,998,985	636,864,128	686,938,861	734,103,982

◆ 지역개발기금 용자수요 감소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
용자 수요	84,800,000	78,600,000	80,300,000	57,000,000

◆ 2016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자동차 등록		각종 계약체결	기타 허가 및 신고
	신규등록	이전등록		
164,376,620 (100%)	98,842,720 (60.1%)	13,263,490 (8.1%)	15,142,740 (9.2%)	37,127,670 (22.6%)

- 다만, 자동차 신규 등록 시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% 감면을 실시한 반면,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 차량의 영업, 비영업 구분 및 배기량(cc) 크기에 상관없이 공채매입을 면제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해 공채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감축하고, 도민의 공채 매입부담을 경감하여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(안 제8조 제2항)
  - ②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 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면 및 매입의무의 한시적 면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8조(공채매입 면제) ② 다만,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.</p>	<p>제8조(공채매입 면제) ②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공기업법

#### 제19조(지방채 등) ① <생 략>
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 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 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